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6
----------	------

제출년월일 : 2007년 3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전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617호(2003. 12. 19)로 개정된 「제천시세 감면조례」 부칙 제2조(적용시한)에 의한 일몰시한(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철도안전법」 등 법령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며, 조례의 내용중 법령명칭 표기방식을 개정된 입법방식에 따르고, 조문 순서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함.

예) 지방세법 ⇒ 「지방세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신설 조례안 제29조)
-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50% 경감하였으나, 유사 단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과세로 전환(삭제 현행조례 제2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폐지하

여 과세로 전환 (현행조례 제15조)

- 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에 의하여 세액산정방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과표경감 조문 삭제 (현행조례 제27조의3)

3. 근 거 법 령 : 붙임

4. 의 안 전 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첨부 1. 기타 참고자료(준칙안) 1부

2. 입법예고(사본) 1부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궐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 등록 ·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00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

-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

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활)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

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

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

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 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 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 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 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 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 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 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 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

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등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9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3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한다.

제31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

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2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천시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천시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초 세액	감면 세액
감면사유	제천시세감면조례 제 조			
<p>제천시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p> <p>년 월 일</p> <p>위 신청인 인(서명) 제 천 시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제 천 시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제천시세 감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제 천 시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팀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팀 - 접수일자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제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생 략)</p> <p>② <u>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u>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u>주민등록법</u>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p>	<p>제1조(목적) 「<u>지방세법</u>」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p> <p>.....</p> <p>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p> <p>.....</p> <p>.....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u>」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p> <p>..... 「<u>주민등록법</u>」</p> <p>.....</p> <p>.....</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1.~4. (생 략) ②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5조 (생 략)	제4조~제5조 (현행과 같음)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7조로 이동>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_____ . _____ . _____ . _____ .
<제5조의1에서 조문 이동>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현 행	개정안
<p>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평생교육법</u>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u>한국노동교육원법</u>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생 략) 4. (생 략) 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u>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u>도서관및독서진흥법</u>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u>과학관육성법</u>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p>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p> <p>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p> <p>—————</p> <p>—————</p> <p>—————</p> <p>—————</p> <p>—————</p> <p>—————</p> <p>—————</p> <p>1. 「<u>평생교육법</u>」—————</p> <p>—————</p> <p>2. 「<u>한국노동교육원법</u>」—————</p> <p>—————</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u>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u>」—————</p> <p>—————</p> <p>6. 「<u>도서관 및 독서진흥법</u>」—————</p> <p>7. 「<u>과학관육성법</u>」—————</p>
<p>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u>교육기본법</u>」—————</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 략)</u></p> <p>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p> <p>2. (생 략)</p> <p>3.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p> <p>② 문화재법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u>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u></p> <p>1. 「문화재보호법」 _____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_____</p> <p>2. (현행과 같음)</p> <p>3.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_____</p> <p>② 「문화재보호법」 _____ _____</p>
<p><u>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u></p> <p><u>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생 략)</u></p> <p>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p> <p>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p> <p>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p> <p>② (생 략)</p>	<p><u>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u></p> <p><u>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u></p> <p>1. 「농어촌정비법」 _____ _____</p> <p>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_____ _____</p> <p>3. 「오지개발촉진법」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생 략)</u></p>	<p><u>제12조 (현행과 같음)</u></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 <u>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u>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u>동법시행령</u>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u>추진주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u>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u>지방세법시행규칙</u>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 「<u>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u>」</p> <p>— 「<u>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u>」 제5조 및 「<u>수산물품질관리법</u>」</p> <p>② 「<u>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u>지방세법 시행규칙</u>」</p>

현 행	개 정 안
<p>③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u>최초로</u>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③ 「<u>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p> <p>-----</p>
<p>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u>지방세법 시행령</u>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p>	<p>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u>지방세법 시행령</u>」 -----</p> <p>-----</p> <p>-----</p>
<p>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u>부가 가치세법</u>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u>지방세법</u>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u>최초로</u>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p>	<p>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u>부가 가치세법</u>」 -----</p> <p>-----</p> <p>-----</p> <p>-----</p> <p>-----</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p> <p>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p> <p><삭 제></p>
<p>제15조의1(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추징한다.</p>	<p>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p> <p>--- 「주차장법」 -----</p> <p>----- 「지방세법 시행령」 -----</p>

현 행	개 정 안
<p>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p> <p><u>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p> <p><삭 제></p>
<p><u>제15조의1(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추징한다.</u></p>	<p><u>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u></p> <p>--- 「주차장법」 -----</p> <p>----- 「지방세법 시행령」 -----</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p> <p><u>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p> <p><u>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p> <p>————</p> <p>————</p> <p>———— 「철도안전법」 제45조의————</p> <p>————</p> <p>————</p> <p><u>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p> <p>————</p> <p>————</p> <p>————</p> <p>———— 다만, 「지방세법」————</p> <p>————</p>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생 략)</p> <p>1.~2 (생 략)</p>	<p>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u>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u>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한다)</u>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u>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u> <u>----- 「지방세법」 -----</u> <u>-----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u></p>
<p><u>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u>에 의하여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u>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u>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u>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u> <u>----- 「지방세법」 -----</u></p>
<p><u>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u>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u>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u></p>	<p><u>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u>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u>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u>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u> 현재 <u>화물유통촉진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 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 4. 1></p>	<p><u>제24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세기준일</u> 현재 「<u>화물유통촉진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 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u>제21조의2(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u> (생략)</p>	<p><u>제25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u> (현행과 같음)</p>
<p><u>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u> (생 략)</p>	<p><u>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u> (현행 과 같음)</p>
<p><u>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u> <u>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u> 의하여 지정된 농공 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 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 에 대하여는 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p>	<p><u>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u> <u>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 ----- ----- -----</u></p>
<p><u>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u> (생 략)</p> <p>1. <u>수도권정비계획법</u> 제6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 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p>	<p><u>제2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현</u> <u>행과 같음)</u></p> <p>1. 「<u>수도권정비계획법</u>」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2. <u>수도권정비계획법</u>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u>수도권정비계획법</u>」 -----</p> <hr/> <hr/> <hr/> <hr/> <hr/>
<p>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u>지방세법시행규칙</u>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u>지방세법시행규칙</u>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	<p>② -----</p> <hr/> <hr/> <hr/> <hr/> <hr/> <p>「<u>지방세법 시행규칙</u>」 제114조의3의 -----</p> <hr/> <hr/> <hr/> <hr/> <hr/>
<p><신 설></p>	<p>제29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u>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4. 1></u></p>	<p><u>제3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u></p>
<p><u>제26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 12. 19></u></p>	<p><u><삭 제></u></p>
<p><u>제27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u></p> <p><u>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u></p>	<p><u>제31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u></p> <p>-----</p> <p>-----</p> <p>-----</p> <p>-----</p> <p>-----</p> <p><u>② 「향교재산법」 -----</u></p> <p>-----</p> <p>-----</p> <p>-----</p> <p>-----</p> <p>-----</p>
<p><u>제27조의2(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u></p> <p>(생 락)</p>	<p><u>제32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u></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의3(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제 7 장 보 채	제7장 보 채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생 략)	제3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현행과 같음)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생 략)	제34조(직접사용의 의미) (현행과 같음)
<p>제3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서식</u>에 의한 제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5조(감면신청 등) ① _____ <u>별지 제1호 서식</u> ----- ----- -----. -----. -----. -----.</p> <p>② ----- <u>그 내용</u>을 <u>별지 제2호 서식</u>에 의하여 -----</p>
제3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u>지방세법</u>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감면자료의 제출) ----- ----- ----- <u>「지방세법」</u> -----
제32조(중복감면의 배제) (생 략)	제37조(중복감면의 배제) (현행과 같음)
제33조(시행규칙) (생 략)	제3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6.9.1 법률 7972호]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12.31 행정자치부령 316호]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개정 1988.5.7>)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5.7, 1998.7.23, 20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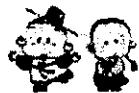
1. 과세면제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증 변경사항 시달

1. 지방세제팀-6674(2006.11.2)호의 이첩 및 도 세정과-11834(2006.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시달된 시 군세감면조례표준안증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에 보완 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시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 전	변 경
구세감면조 례표준안	<p>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p> <p>----- 재산세를 면제한다.</p> <p>다만, 총자산중 <u>민간출자분</u> 또는 <u>민간출</u> <u>연분이</u> 있는 경우 그 <u>민간출자비율</u> 또는 <u>민간출연비율</u>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p>	<p>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p> <p>-----</p> <p>-----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 다만, 총자산중 <u>민간출자분</u> 또는 <u>민</u> <u>간출연분이</u> 있는 경우 그 <u>민간출자비율</u> <u>또는 민간출연비율</u>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시·군세감 면조례표 준안	<p>제2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 면) -----</p> <p>----- 다만, 총 자산 중 <u>민간출자분이</u> 있는 경우 그 <u>민간출자</u> <u>비율</u>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 면) -----</p> <p>----- 다만, 총 자 산중 <u>민간출자분</u> 또는 <u>민간출연분이</u> 있는 경우 그 <u>민간출자비율</u> 또는 <u>민간출연비율</u>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끝.

변화와 실천으로 으뜸 충북을 !



충 청 북 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시달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6609(2006.10.31)호의 이철입니다.

2.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시달하니,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금년말까지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2007.1.1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3. 각 시·군에서는 조례개정일정과 개정현황을 작성하여 2006.12..29(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관계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중에 있으므로 지방의회 감면조례 의결시 해당법령의 의결여부를 확인 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붙 임 1.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 검토결과 1부.

2. 지방세감면조례 검토내용 1부.

3.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D01-12(세정업무관련과장)

★지방세무주사보 박종태

지방행정사무관 유영석

세정과장

11/1
강신방

협조자

시행 세정과-11030 (2006.11.03.) 접수 세정과-13326 (2006.11.03.)

우 360-70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618 / 전송 043) 220-2619 / 8810828@cb21.net / 공개

★도서당당	세정과장				
박문수	12/12 박성웅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1. 조례명 :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06. 11. 10 - 2006. 11. 30

3. 입법 :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4. 예고내용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12.31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세감면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함 끝.

입법예고

제천시 공고 제 2006 - 1602호

「제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10.

제 천 시 장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정이유

「제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12.31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 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전면 개정코자 함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617호(2003. 12. 19)로 개정된 「제천시세 감면조례」 부칙 제2조(적용 시한)의 규정에 의한 일몰시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철도안전법」 등 법령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며, 조례의 내용중 법령명칭 표기방식을 개정된 입법방식에 따르고, 조문 순서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함.

예) 지방세법 ⇒ 「지방세법」으로 표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

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신설 조례안 제30조)

-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50% 경감하였으나, 유사 단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과세로 전환 (삭제 현행조례 제29조)
- 고령화와 고용안정성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문제 등 고령자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조례안 제8조)

***관계법령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이 여부에 따라 의결전에 수정 및 보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폐지 과세로 전환 (현행조례 제15조)
- 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에 의하여 세액산정방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과표경감 조문 삭제 (현행조례 제27조의3)

□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30일까지 제천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전화640-5261, FAX 640-525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